

서울특별시마포구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07. 6. .

제 출 자 :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1. 개정이유

우리구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구민의 구정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자참여 행사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홈페이지 이용자들이 마일리지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홈페이지의 갱신에 필요한 비용 충당을 위해 광고를 유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정의를 보완하고 추가함 (안 제2조)
- 나. 홈페이지에 게시되지 않은 정보에 대한 공개 청구 및 관련 규정 등에 근거한 공개여부 결정 규정을 마련함 (안 제8조)
- 다. 홈페이지 이용자의 적극적인 구정참여 또는 구정홍보 등을 위하여 홈페이지 이용자 참여행사를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안 제14조의2)
- 라. 구민들의 적극적인 구정참여를 유도하고자 마일리지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함 (안 제14조의3)
- 마. 홈페이지를 통한 세금 등의 납부에 필요한 제도 및 시스템 마련과 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대해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안 제14조의4)
- 바.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행정정보의 갱신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충당하기 위하여 홈페이지에 상업적 광고를 유치할 수 있는 근거와 감면기준을 마련함 (안 제14조의5, 안 제14조의6)

사. 홈페이지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의 보호에 대한 규정과 예외사항 등을 정함 (안 제18조)

아. 마일리지의 부여기준을 정함 (안 별표 1)

3. 조 례 안 : 따로붙임

4.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5. 기타사항

가. 입법예고(2007. 5. 23 ~ 6. 12)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나.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2007. 6. 14)

다. 신·구조문 대비표 1부.

서울특별시마포구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마포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마포구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를 “서울특별시마포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중 “정보화촉진기본법 제13조”를 “「정보화촉진기본법」 제2조의2”로 한다.

제2조제3호중 “함은 이용자에게 “를 ” 함은 구와 그 소속행정기관이 이용자에게 “로 하고, 동조제4호중 ”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을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로 하며, 동조제5호 및 동조제8호 내지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5. “개인정보”라 함은 사망했거나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의 사항에 의하여 당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당해 정보만으로는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식별할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8.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9. “이용자”라 함은 구가 제공하는 인터넷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자를 말한다.

10. “전자민원창구”라 함은 인터넷민원을 처리하기 위하여 홈페이지에 설치·운영하는 민원창구를 말한다.

제3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전자민원창구의 운영

제4조중 “수렴하여 반영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를 “수렴하거나 「서울특별시 마포구 정보화촉진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서울특별시 마포구 정보화촉진협의회의 자문을 활용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6조제2항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조동항제9호중 “똑같은 내용을 주 2회이상 게시하거나 비슷한 내용을 1일 2회이상 게시하는 경우”를 “똑같거나 유사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올리는 경우”로 하며, 동조동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기타 공익을 저해하거나 게시판 운영 취지에 맞는 앓는 게시물 및 연습, 오류, 장난성의 내용 등

제7조제1항중 “행정관리국장”을 “기획재정국장”으로 한다.

제8조의 제목 및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정보공개 청구) ①이용자는 구청장에게 제5조제3항에 의한 정보와 관련하여 홈페이지에 게시되지 앓는 정보에 대하여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②구청장은 제1항에 의한 정보공개청구를 받은 때에는 관계법령 및 자치법규에서 정한 기준 및 절차에 의하여 공개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개인 정보가 포함된 자료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3장의 제목중 “사이버 민원실”을 “전자민원창구 ”로 한다.

제9조의 제목 및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전자민원창구의 설치·운영) ①구청장은 인터넷민원을 처리하기 위하여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민원창구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제9조제2항중 “사이버민원실”을 “전자민원창구”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11조”를 “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0조제1항에 의하여”로 한다.

제1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구청장은 제9조제1항의 전자민원창구의 신청대상민원 처리절차 및 처리비용 등을 정하여 당해 창구에 그 내용을 게시하여야 한다.

제10조제2항중 “사이버민원실의 인터넷”을 “전자민원창구의”로, “게재된 처리비”를 “처리비용”으로, “입금이 확인된 이후에 접수된 것으로 본다”를 “입금한 것이 확인된 이후에 성립한다”로 한다.

제10조제3항 및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전자민원창구에 접수된 민원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④제9조제2항에 의한 민원상담의 내용은 원칙적으로 공개하되 민원인이 비공개를 요구하는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11조제2항중 “공개대상민원에 대하여는 접수부터 처리과정, 처리결과과정의 과정을 사이버민원실”을 “구청장은 공개대상민원에 대하여는 접수·처리과정 및 처리결과를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민원창구”로 하고, 동조제4항중 “민원처리기관에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담당부서의 장”을 “구청장에게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청장”으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민원상담 기능 제공”을 “민원상담”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사이버민원실에”를 “홈페이지를 통한”으로 하며,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민원상담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의하여 실명에 의한 상담등록을 한 민원사항에 한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민원상담 및 답변처리를 한다.

제14조의2 내지 제14조의6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이용자참여 행사의 운영) 구청장은 홈페이지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구정참여 또는 구정홍보 등을 위하여 홈페이지에 다음 각 호의 이용자 참여 행사(이하 "행사"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1. 주요 시책사업·계획 및 업무 등을 홍보하고자 하는 경우
2. 각종 축제의 개최를 홍보·기념하고자 하는 경우
3. 인터넷 커뮤니티 활동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경우
4. 인터넷시스템의 개설을 기념하고자 하는 경우

제14조의3(홈페이지 이용 마일리지의 운영) ①구청장은 홈페이지 이용자의 적극적인 구정참여 또는 구정홍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홈페이지 이용자에 대하여 그 이용목적·횟수 및 구정에의 기여도 등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고 그 누적된 점수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마일리를 운영할 수 있다.

1. 휴대 전화 문자메시지 전송서비스
2. 그 밖에 공공서비스 이용수단으로서 구청장이 정하는 것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누적 마일리지의 사용에 대하여는 유효기한을 두되,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구청장이 정한다

③마일리지의 부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되, 구청장은 마일리지 사용방법 및 그 밖에 마일리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이를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4조의4(수수료) ①구청장은 세금·수수료 및 과태료 등을 인터넷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 및 시스템 등의 마련에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홈페이지를 통해 정보공개를 신청하여 정보를 제공받는 자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징수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수수료 징수조례」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의5(광고유치) ①구청장은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법률」 제3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행정정보의 갱신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충당하기 위하여 홈페이지에 상업적 광고를 유치할 수 있다.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를 유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광고의 위치·규격·기간·내용기준 및 선정절차 등을 구보 및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광고계약은 일반경쟁입찰에 의한 계약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수의 계약으로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광고료의 산정방법 및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의6(광고료의 감면)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의 광고주에 대하여는 광고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을 위하여 게재를 요청한 광고
2.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게재를 요청한 광고
3. 그 밖에 구정과 관련된 광고

제5장의 제목중 "ID 보급"을 "서비스"로 한다.

제15조의 제목 및 제1항·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전자우편 서비스 제공) ①구청장은 효율적인 민원처리와 지역정보화의 활성화를 위하여 홈페이지에 전자우편서비스를 제공한다.

②구청장은 전자우편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그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하고, 구민과 소속 공무원 등은 게시한 내용을 준수함으로써 서비스를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제16조를 삭제하며, 제1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구청장은 구를 홍보하기 위하여 외국어 홈페이지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7조제3항중 "담당부서를 지정·관리하여야 하며 외부전문기관에"를 "외부 전문기관에 외국어의 번역 및 감수와 홈페이지의"로 한다.

제18조제1항중 "하여야 한다"를 "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로 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구청장은 인터넷 홈페이지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를 본인의 승낙없이 제3자에게 누설 또는 배포할 수 없으며 타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관계 법령에 의하여 수사상 목적으로 관계기관으로부터 요구가 있는 경우
2.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

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가공하여 제공하는 경우

3. 기타 관계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요청한 경우

제18조제3항 내지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구청장은 "개인정보보호방침"을 정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④구청장은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개인정보보호책임관"을 지정 운영하여야 한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9조제1항 및 제2항중 "전산정보과장"을 "구청장"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매주 전체의 자료를, 매일 변동자료를 복사하여"를 "일정한 주기로 백업한 자료를"로 한다.

별표 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일리지 부여기준 (제14조의2 제3항관련)

구 분	대 상	부여점수	부여방법
가. 회원가입	홈페이지 회원 신규가입자	100점	가입시 1회
나. 로그인	홈페이지 방문자	1점	1일 1회
다. 글·사진 및 동영상의 게시	글·사진·동영상을 게시한 자. 이 경우, 게시물은 직접 구청 참여와 관련된 것으로서 구청장이 인정하는 것에 적용할 것	10점이상 50점이하	게시물별로 각각 승인처리하여 점수를 부여하되, 당해 게시물 운영 홈페이지에서 1인 1일당 1건의 게시물에 한정하여 점수를 부여할 것
라. 설문조사 응답	홈페이지 회원	10점	설문조사별 1회

비고 : 위 점수의 1점은 1원에 상당하는 액수로 환산하여 적용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마일리지의 부여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3의 개정규정에 의한 마일리지의 부여는 이 조례의 시행일 이후에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자부터 적용하되, 이 조례 시행당시 이미 홈페이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자에 대해서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라 100점을 부여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명 : <u>서울특별시마포구인터넷시스템 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정보화촉진기본법 제13조</u>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가 인터넷 이용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 및 2. (생략)</p> <p>3. "홈페이지"라 함은 <u>이용자에게</u>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축한 인터넷 활용공간을 말한다.</p> <p>4. "인터넷민원"이라 함은 <u>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u> 제2조 및 구가 특별히 규정한 민원사무중 홈페이지를 통하여 접수하거나 처리되는 민원을 말한다.</p> <p>5. "개인정보"라 함은 <u>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u>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를 말한다.</p> <p>6. 및 7. (생략)</p> <p><u><신설></u></p>	<p>제명 : <u>서울특별시 마포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u></p> <p>제1조(목적)----- 「<u>정보화촉진기본법</u>」 제2조의2 ----- ----- ----- -----</p> <p>제2조(정의) ----- -----</p> <p>1. 및 2. (현행과 같음)</p> <p>3. ----- <u>함은 구와 그 소속행정기관이 이용자에게</u>----- -----</p> <p>4. ----- 「<u>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u>」----- -----</p> <p>5. "개인정보"라 함은 <u>사망했거나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의 사항에 의하여 당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당해 정보만으로는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식별할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u>를 말한다.</p> <p>6. 및 7. (현행과 같음)</p> <p>8. "정보"라 함은 <u>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u>을 말한다.</p>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신설></u></p> <p><u><신설></u></p> <p>제3조(인터넷시스템 구축운영) ① (생략)</p> <p>② 홈페이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포함하여 구성한다.</p> <p>1. 및 2. (생략)</p> <p>3. <u>사이버 민원실 운영</u></p> <p>4.~7. (생략)</p> <p>③ 및 ④ (생략)</p> <p>제4조(인터넷시스템 개선) 인터넷시스템운영주관부서 및 홈페이지관리부서의 장(이하 "전산정보과장"이라 한다)은 인터넷시스템의 개선을 위하여 연1회이상 이용자의 의견을 <u>수렴하여 반영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u></p> <p>제6조(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 ① (생략)</p> <p>② 담당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제시한 자료 중 다음 <u>각호의 1</u>에 해당하는 자료는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p> <p>1.~8. (생략)</p> <p>9.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u>똑같은 내용을 주 2회이상 게시하거나 비슷한 내용을 1일 2회이상 게시하는 경우</u></p>	<p>9. "<u>이용자</u>"라 함은 구가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자를 말한다.</p> <p>10. "<u>전자민원창구</u>"라 함은 인터넷민원을 처리하기 위하여 홈페이지에 설치·운영하는 민원창구를 말한다.</p> <p>제3조(인터넷시스템 구축·운영) ①(현행과 같음)</p> <p>② ----- -----</p> <p>1. 및 2. (현행과 같음)</p> <p>3. <u>전자민원창구의 운영</u></p> <p>4.~7. (현행과 같음)</p> <p>③ 및 ④ (현행과 같음)</p> <p>제4조(인터넷시스템 개선)----- ----- ----- ----- -----수렴하거나 「서울특별시 마포구 정보화촉진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서울특별시마포구정보화촉진협의회의 자문을 활용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p> <p>제6조(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u>각 호의 어느 하나</u>----- -----</p> <p>1.~8. (현행과 같음)</p> <p>9. ----- -- <u>똑같거나 유사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올리는 경우</u></p>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10. 기타 연습성, 오류, 장난성의 내용등</p> <p>제7조(심사위원회 구성 운영등)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행정관리국장이 되며, 위원은 감사담당관, 구분청 각국별 주무과장과 보건소 보건위생 과장으로 한다.</p> <p>②~⑦ (생략)</p> <p>제8조(홈페이지 자료제공) 구청장은 홈페이지에 수록한 정보에 대하여 이용자가 정보제공을 요청할 경우 비영리목적여부 등을 판단하여 제공할 수 있다. 단,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p> <p>제3장 홈페이지를 통한 사이버 민원실 운영</p> <p>제9조(사이버 민원실 설치 운영)①구청장은 인터넷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5항에 의한 사이버 민원실을 설치하여야 하며 사이버 민원실에 접수한 민원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p> <p>②사이버민원실은 인터넷 민원처리, 민원처리 공개, 민원상담 기능을 제공하여야 하며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해 설치된 민원담당부서에서 총괄하고, 민원처리 공개는 감사담당관에서 관리한다.</p> <p>③ (생략)</p>	<p>10. 기타 공익을 저해하거나 게시판 운영 취지에 맞는 않는 게시물 및 연습, 오류, 장난성의 내용 등</p> <p>제7조(심사위원회 구성 운영등) ①----- -----기획 제정국장----- -----</p> <p>②~⑦ (현행과 같음)</p> <p>제8조(정보공개청구) ①이용자는 구청장에게 제5조제3항에 의한 정보와 관련하여 홈페이지에 게시되지 않은 정보에 대하여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p> <p>② 구청장은 제1항에 의한 정보공개청구를 받은 때에는 관계법령 및 자치법규에서 정한 기준 및 절차에 의하여 공개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는 공개하지 아니한다.</p> <p>제3장 홈페이지를 통한 전자민원창구 운영</p> <p>제9조(전자민원창구의 설치·운영)①구청장은 인터넷민원을 처리하기 위하여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민원창구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p> <p>②전자민원창구는 ----- ----- ---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의하여 ----- -----</p> <p>③ (현행과 같음)</p>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10조(인터넷 민원처리) ①인터넷 신청대상 민원은 본인의 확인과 첨부서류가 필요 없는 민원에 한하며 민원의 종류, 민원별 처리비용 및 처리기간 등을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p> <p>②사이버민원실의 인터넷 민원접수는 발급수수료, 우송료 등 <u>게재된 처리비용</u>을 구청장이 관리하는 은행계좌 등에 <u>입금이 확인된 이후에 접수된 것으로 본다.</u></p> <p><신설></p> <p><신설></p> <p>제11조(민원처리 공개) ① (생략) ② <u>공개대상민원에 대하여는 접수부터 처리과정, 처리결과</u>의 과정을 사이버 민원실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인이 공개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생략) ④ <u>민원인은 신청한 비밀번호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비밀번호가 노출되었을 때에는 민원처리기관에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담당부서의 장은 본인임을 확인 후 지체없이 변경에 응하여야 한다.</u></p>	<p>제10조(인터넷 민원처리) ①<u>구청장은 제9조제1항의 전자민원창구의 신청대상민원 처리절차 및 처리비용 등을 정하여 당해 창구에 그 내용을 게시하여야 한다.</u></p> <p>②<u>전자민원창구의 민원접수는 발급수수료, 우송료 등 처리비용을 구청장이 관리하는 은행계좌 등에 입금한 것이 확인된 이후에 성립한다.</u></p> <p>③<u>전자민원창구에 접수된 민원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u></p> <p>④<u>제9조제2항에 의한 민원상담의 내용은 원칙적으로 공개하되 민원인이 비공개를 요구하는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u></p> <p>제11조(민원처리 공개) ① (현행과 같음) ② <u>구청장은 공개대상민원에 대하여는 접수·처리과정 및 처리결과를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민원창구 -----</u> ----- ----- ③ (현행과 같음) ④ ----- ----- ----- <u>구청장에게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청장</u> ----- ----- -----</p>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2조(민원상담 기능 제공) ①구청장은 민원인이 요청한 각종 건의 및 요구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u>사이버 민원실에</u> 민원상담 기능을 제공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민원분야별로 민원상담관을 지정 운영할 수 있다.</p>	<p>제12조(민원상담) ① ----- ----- ----- <u>홈페이지를 통한</u> ----- -----</p>
<p>②<u>사이버 민원실을 이용한 민원상담 내용은 원칙적으로 공개하되 민원인이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u></p>	<p>②민원상담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의하여 실명에 의한 상담등록을 한 민원사항에 한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민원상담 및 답변처리를 한다.</p>
<p><신설></p>	<p>제14조의2(이용자참여 행사의 운영)구청장은 홈페이지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구정참여 또는 구정홍보 등을 위하여 홈페이지에 다음 각 호의 이용자참여 행사(이하 "행사"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주요 시책사업·계획 및 업무 등을 홍보하고자 하는 경우 2. 각종 축제의 개최를 홍보·기념하고자 하는 경우 3. 인터넷 커뮤니티 활동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경우 4. 인터넷시스템의 개선을 기념하고자 하는 경우
<p><신설></p>	<p>제14조의3(홈페이지 이용 마일리지의 운영) ①구청장은 홈페이지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구정참여 또는 구정홍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홈페이지 이용자에 대하여 그 이용목적·횟수 및 구정에의 기여도 등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고 그 누적된 점수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마일리지를 운영할 수 있다.</p>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신설></p>	<p>1. <u>휴대 전화 문자메시지 전송서비스</u> 2. <u>그 밖에 공공서비스 이용수단으로서 구청장이 정하는 것</u>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누적 마일리지의 사용에 대하여는 유효기한을 두되, <u>예산의 범위 안에서 구청장이 정한다</u> ③마일리지의 부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u>별표 1의 규정에 의하되, 구청장은 마일리지 사용방법 및 그 밖에 마일리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이를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u></p>
<p><신설></p>	<p>제14조의4(수수료) ①<u>구청장은 세금·수수료 및 과태료 등을 인터넷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 및 시스템 등의 마련에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u> ②<u>구청장은 홈페이지를 통해 정보공개를 신청하여 정보를 제공받는 자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u>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징수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수수료 징수조례」 규정을 준용한다.</p>
<p><신설></p>	<p>제14조의5(광고유치) ①<u>구청장은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3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행정정보의 갱신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충당하기 위하여 홈페이지에 상업적 광고를 유치할 수 있다.</u></p>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신설></p>	<p>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를 유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광고의 위치·규격·기간·내용기준 및 선정절차 등을 구보 및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p> <p>③광고계약은 일반경쟁입찰에 의한 계약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수익계약으로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p> <p>④광고료의 산정방법 및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신설></p>	<p>제14조의6(광고료의 감면)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의 광고주에 대하여는 광고료를 감면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을 위하여 게재를 요청한 광고 2.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게재를 요청한 광고 3. 그 밖에 구정과 관련된 광고
<p>제5장 전자우편 ID 보급</p> <p>제15조(구민 등에 대한 전자우편 ID 보급) ①구청장은 지역정보화 활성화와 효율적인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민에게 전자우편 ID를 보급할 수 있으며 보급 및 운영방법은 구청장이 정한다.</p>	<p>제5장 전자우편 서비스</p> <p>제15조(전자우편 서비스 제공) ①구청장은 효율적인 민원처리와 지역정보화의 활성화를 위하여 홈페이지에 전자우편서비스를 제공한다.</p>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②구청장은 전자우편 ID 보급 운영에 관한 사항을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하고, 보급받은 주민은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준수하면서 사용할 권한을 가진다.</p> <p>제16조(공무원에 대한 전자우편 ID 보급) <u>구청장은 행정능률 향상과 효율적인 민원처리를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전자우편 ID를 보급하여야 하며 그 이용을 활성화하여야 한다.</u></p> <p>제17조(외국어 홈페이지의 설치 운영) ①<u>구청장은 국외에 구를 홍보하기 위하여 외국어 홈페이지를 운영하여야 하며 홍보효과가 큰 영어 홈페이지를 우선하여 설치 운영할 수 있다.</u></p> <p>② (생략)</p> <p>③<u>구청장은 외국어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담당부서를 지정 관리하여야 하며 외부전문기관에 개발 유지 보수 및 운영을 위탁관리 할 수 있다.</u></p> <p>제18조(개인정보보호) ①<u>구청장은 인터넷시스템을 통해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u></p>	<p>②구청장은 전자우편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그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하고, 구민과 소속 공무원 등은 게시한 내용을 준수함으로써 서비스를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p> <p><삭제></p> <p>제17조(외국어 홈페이지의 설치 운영) ①<u>구청장은 구를 홍보하기 위하여 외국어 홈페이지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u></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 ----- 외부전문기관에 외국어의 번역 및 감수와 홈페이지의 ----- -----</p> <p>제18조(개인정보보호) ①----- ----- -----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p>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②인터넷시스템에 수록되어 있는 개인정보 DB는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한다.</p>	<p>②구청장은 인터넷 홈페이지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를 본인의 승낙없이 제3자에게 누설 또는 배포할 수 없으며 타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관계 법령에 의하여 수사상 목적으로 관계기관으로부터 요구가 있는 경우 2.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가공하여 제공하는 경우 3. 기타 관계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요청한 경우
<p><신설></p>	<p>③구청장은 "개인정보보호방침"을 정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p>
<p><신설></p>	<p>④구청장은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개인정보보호책임관"을 지정 운영하여야 한다.</p>
<p><신설></p>	<p>⑤제1항 내지 제4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제19조(시스템 안전대책) ①전산정보과장은 인터넷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대책을 강구해야 한다.</p>	<p>제19조(시스템 안전대책) ①구청장</p> <p>-----</p> <p>-----</p>
<p>②전산정보과장은 정보의 손상 및 파괴 등 사고에 대비하여 매주 전체의 자료를, 매일 변동자료를 복사하여 별도의 안전한 장소에 보관 관리하여야 하며 사고발생시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p>	<p>②구청장-----</p> <p>-----일정한 주기로 백업한 자료를-----</p> <p>-----</p> <p>-----</p> <p>-----</p>